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베트남/하노이지사 작성)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- 베트남, 생산·수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인증 관련 규정 통합시행
- ‘23.2.23.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규정* 및 생산시설의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*의 통합본 제 02/VBHN-BNNPTNT호 공포
 - * ‘13.11.12. 제48/2013/TT-BNNPTNT호 및 ‘22.12.30. 제32/2022/TT-BNNPTNT호
 -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

<주요 변경사항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식품안전인증서 발급 후 검사	○ 정기검사 : 아래와 같은 빈도로 식품 안전 인증서를 발급받은 생산시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검사 - 1급 및 2급 시설 : 1년에 1회 - 3급 시설 : 6개월에 1회 - 4급 시설 : 검사를 받은 시설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검사기관이 결정하되, 직전 검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 ○ 불시검사 : 예고 없는 검사의 한 형태이며, 본 법령에 명시된 위반 징후를 보이는 시설에 적용된다. 또는 단체 및 개인의 고발이 있을 때 적용된다.	○ 정기검사 : 아래와 같은 빈도로 식품 안전 인증서를 발급받은 생산시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검사 - 1급 및 2급 시설 : 1년에 1회 - 3급 시설 : 6개월에 1회 - 4급 시설 : 검사를 받은 시설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검사기관이 결정하되, 직전 검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	삭제
인증서 발급에 대한 규정	○ 각 수출 건에 대해 1개의 인증서가 발급된다.	○ 경유, 임시수입, 재수출 등 수출 형태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다.	세분화
인증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	○ 검사기관이 수입중단을 요청한 경우 ○ 동 법령 제18조에 의거 식품 안전인증서가 회수되었을 경우 ○ 제품 품질에 관한 동 법령 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생산이 중단된 시설	○ 검사기관이 수입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농업농촌개발부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발급이 중지된 경우 ○ 식품안전인증서 발급 후 검사에서 4급 시설로 분류된 경우 ○ 제품 품질에 관한 동 법령 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생산이 중단된 시설	추가

*자료원 : 자체번역

□ 시사점

- 베트남에서는 1999년 ‘식품안전 및 위생을 위한 운동’을 시작으로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캠페인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, 베트남 정부 또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함
- 최근 베트남에서 생산·수출되는 수산물에 관한 규정이 통합되었고, 수산물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베트남 내 재가공을 위한 수산물 수출 시 품질 등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
□ 출 처

-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생산시설의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을 통합본(제02/VBHN-BNNPTNT호)

<https://thuvienphapluat.vn/van-ban/Xuat-nhap-khau/Van-ban-hop-nhat-02-VBHN-BNNPTNT-2023-Tong-tu-kiem-tra-an-toan-thuc-pham-thuy-san-xuat-khau-557699.aspx>